
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」 개정(안)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						
<p><b>I. 대출이율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59 288 952 1177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. 자금조정대출</td> <td>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  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  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</td> </tr> <tr> <td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td> <td><b>연 0.75%</b>  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<sup>1)</sup>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td> </tr> <tr> <td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td> <td>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</p> <p><b>II. 예금이율</b> (생략)</p> <p><b>III. 기타</b> 1. 시행일자 : 2022년 5월 26일</p>	구분	이율	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. 자금조정대출	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  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  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	2. 금융중개지원대출	<b>연 0.75%</b>  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<sup>1)</sup>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	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	<p><b>I. 대출이율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43 288 1836 1177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. 자금조정대출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2. 금융중개지원대출</td> <td><b>연 1.00%</b>  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<sup>1)</sup>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</td> </tr> <tr> <td>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</p> <p><b>II. 예금이율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III. 기타</b> 1. 시행일자 : 2022년 7월 13일</p>	구분	이율	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. 자금조정대출	(현행과 같음)	2. 금융중개지원대출	<b>연 1.00%</b>  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<sup>1)</sup>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	(현행과 같음)	<p>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.25%p 인상하되, 한도 유보분 중 일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</p> <p>— 시행일자 명시</p>
구분	이율																	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. 자금조정대출	(1)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“한국은행 기준금리”라 한다)에 1%포인트를 더한 이율  다만,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%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율  (2)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																	
2. 금융중개지원대출	<b>연 0.75%</b>  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<sup>1)</sup>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																
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	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(무담보 익일물 기준)를 차감한 율(최저이율은 0%)로 하되,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																	
구분	이율																	
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. 자금조정대출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
2. 금융중개지원대출	<b>연 1.00%</b>  다만,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<sup>1)</sup>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.25%																	
3. 일중당좌대출 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